제 6 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

제 6.1 조 목적 및 원칙

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양자 및 다자 간 관세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, 양 당사자는 다음의 목적과 원칙을 기반으로 협력하고, 상품에 대한 수입,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를 채택하고 적용하기로 합의한다.

- 가. 상품에 대한 수입,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가 효율적이고 비례 적이도록 보장하기 위해서,
 - 1) 각 당사자는 적절한 통관관리 및 선별절차를 유지하면서 신속 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
 - 2) 수입,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무역 제한적이 지 아니하도록 한다.
 - 3) 각 당사자는 최소한의 문서로 상품의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전자시스템이 세관 이용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.
 - 4) 각 당사자는 상품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 술을 이용한다.
 - 5) 각 당사자는 수입, 수출 및 통과 사안을 포함하여 국경통제에 관여하는 자신의 관세당국 및 기관이 협력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할 것을 보장한다. 그리고
 - 6) 각 당사자는 관세사의 이용이 선택적이도록 규정한다.
- 나. 수입,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가 양 당사자가 수용한 국제 무역 및 관세 관련 합의문서와 표준에 근거해야 하며,
 - 1) 국제 무역 및 관세 관련 합의문서와 표준은,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인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, 그러한 합의문서와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입,

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의 기초가 된다. 그리고

- 2) 자료 요건 및 절차는 세계관세기구(이하 "세계관세기구"라 한다) 관세자료모델 및 관련된 세계관세기구의 권고와 지침에따라 점진적으로 사용되고 적용된다.
- 다. 요건 및 절차는 수입자, 수출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투명 하고 예측가능하도록 한다.
- 라. 각 당사자는 새로운 또는 개정되는 중요한 요건 및 절차의 채택이전에 이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 공동체 및 그밖의 이해당사자 대표와 시의적절하게 협의한다.
- 마. 위험관리 원칙 또는 절차는 주목할 만한 거래에 준수노력을 집중 하도록 적용된다.
- 바.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된 무역원활화 조치의 적용과 준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한다. 그리고
- 사.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한 조치는 국가 안보, 건강 및 환경의 보호 와 같은 정당한 정책 목적의 달성을 저해하지 아니한다.

제 6.2 조 상품의 반출

- 1. 각 당사자는 양 당사자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통관과 그 밖의 무역 관련 요건 및 절차를 채택하고 적용한다.
- 2. 제1항에 따라,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세당국, 국경기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요건과 절차를 적용하도록 보장한다.
 - 가. 자신의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관련 법과 형식의 준수를 보장하는 데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요건과 절차. 각 당사자는 반출 시간을 더욱 줄이도록 노력한다.
 - 나.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물리적 도착

전에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최종 처리("도착전 처리")하도록 규정하는 요건과 절차

- 다. 적용 가능한 관세, 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신의 관세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, 그리고 이를 저해함이 없이, 수입자가 세관으로부터 상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요건과 절차1), 그리고
- 라.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 지점에서 상품이 자유로이 유통되도록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요건과 절차

제 6.3 조 간소화된 통관절차

양 당사자는 탁송화물의 물리적 도착 전 정보의 사전 전자적 제출 및 처리, 적은 횟수의 개장검사, 그리고 예를 들어 최소한의 문서로 하는 간소화된 신고에 대한 무역원활화를 포함하여 특히 상품의 더욱 신속한 반출 및 통관을 제공함으로써, 어느 한 쪽 당사자가 결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무역업자 또는 경제 운영자에게 간소화된 수입 및 수출 절차를 적용하도록 노력한다.

제 6.4 조 위험관리

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세당국이 검사 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위험 분석과 선별을 위하여,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위험관리 시스템을 적용한다. 각 당사자는 자신의 위험관리 절차를 위하여 1999년도 *통관절차의 간소*

¹⁾ 당사자는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, 조세 및 수수료의 최종 지급액을 충당하는 충분 한 보증을 담보,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(이하 "교토협약"이라 한다) 개정판과 세계관세 기구 위험 관리 지침을 이용한다.

제 6.5 조 투 명 성

- 1. 각 당사자는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하여 자신의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관련 법, 규정 및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그 밖의 요건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매체를 통해, 그리고 실행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공식적인 웹사이트를통해,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용이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.
- 2. 각 당사자는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관련 사안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질의를 다루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질의처 또는 정보처를 지정하거나 유지 한다.
- 3. 각 당사자는 무역 공동체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의 대표들과 협의하고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. 그러한 협의 및 정보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중요한 요건 및 절차를 대상으로 하며, 채택 전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제공된다.

제 6.6 조 사전심사

1. 무역업자로부터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,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, 원산지 또는 그 당사자가 결정하는 그 밖의 문제에 관해 서면 사전심사 결정서를 자신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발급한다.

- 2. 각 당사자는, 자신의 법과 규정상의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, 품목 분류 및 그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에 관한 자신의 사전심사 결정을, 예를 들어 인터넷에 공표한다.
- 3.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, 양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사안에 관한 그들 각자의 법령의 변경에 대한 정기적 갱신을 그들의 양자대 화에 포함한다.

제 6.7 조 불복청구 절차

- 1. 각 당사자는 관세 사안과 그 밖의 수입,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의 결정에 관하여, 그러한 결정의 대상이 된 관련 인이 그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불복청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 당사자는 불복청구가, 사법당국이나 행정재판소가 될 수 있는 상위 독립기관에 의한 재심에 앞서, 동일한 기관, 그 감독당국 또는 사법당국에 의해 먼저 심리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2.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, 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대한 재심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행정적 재심을 수행하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.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행정적 재심을 수행하는 당사자에게 그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6.8 조 비밀유지

1. 제6.7조에 따라 요청된 경우를 포함하여,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어느한 쪽 당사자의 인 또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자의 당국에 제공한 어떠한 정

보도 각 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비밀 또는 제한적인 성격으로 취급된다. 이는 공식적인 비밀엄수 의무의 대상이 되고, 이를 받은 당사자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유사한 정보에 주어지는 보호를 받는다.

- 2. 개인 자료는 그 자료를 받는 당사자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당사자에서 그 특정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과 최소한 동등한 방식으로 그러한 자료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만 교환될 수 있다. 정보를 제공하는 인은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적용 가능한 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어떠한 요건도요구하지 아니한다.
- 3.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, 이를 제공하는 인 또는 당국의 명시적 허락 없이, 이를 받은 당사자의 당국에 의해 제공된 것 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서 는 아니 된다.
- 4.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국의 명시적 허락을 받은 경우 외에는,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, 법적 절차와 연계하여 그것을 받은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할 의무가 있거나 권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어떠한 인에게도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되지 아니한다. 그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국은, 가능한 경우 사전에, 그러한 공개를 통보받는다.
- 5. 당사자의 당국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, 요청을 받은 인에게 법적 절차와 연계된 정보 공개의 모든 가능성을 통보한다.
- 6. 요청하는 당사자는, 정보를 제공한 인이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, 제3자 또는 그 밖의 당국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신청하는 경우,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고 개인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이용 가능한 조치를 적절한 경우 언제나 사용한다.

제 6.9 조 수수료 및 부과금

관세와 제2.3조(관세)에 따라 관세의 정의에서 제외된 항목 외에,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하여,

- 가. 수수료 및 부과금은 해당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나 그러한 수입 또는 수출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모든 형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.
- 나. 수수료 및 부과금은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
- 다. 수수료 및 부과금은 종가세 방식으로 계산되지 아니한다.
- 라. 수수료 및 부과금은 영사서비스에 관하여 부과되지 아니한다.
- 마.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정보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매체를 통해, 그리고 실행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공식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된다. 이 정보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또는 부과금이 부과된 이유, 담당 당국, 적용될 수수료 및 부과금, 그리고 지급될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다. 그리고
- 바. 새로운 또는 개정된 수수료 및 부과금은 마호에 따른 정보가 공표되고 용이하게 이용 가능해지기 전까지 부과되지 아니한다.

제 6.10 조 선적 전 검사

어떠한 당사자도 선적 전 검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것의 이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.

제 6.11 조 통관사후심사

각 당사자는 무역업자에게 효율적인 통관사후심사의 적용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 통관사후심사의 적용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요건 또는 부담을 무역업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한다.

제 6.12 조 관세평가

관세평가협정은, 관세평가협정 제20조 및 부속서 3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유보 및 선택권을 제외하고,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.

제 6.13 조 관세협력

- 1. 양 당사자는 관세 및 관세 관련 사안에 대해서 협력을 증진한다.
- 2. 양 당사자는 국제기구가 이와 연계해서 행한 작업을 고려하여, 관세 사안에서의 무역원활화 조치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한다. 이는 새로운 관세 절 차의 시험을 포함할 수 있다.
- 3. 양 당사자는 상품의 합법적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며,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통관 기술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전산화 시스템에 관한 전문성을 교환한다.
 - 4. 양 당사자는 다음을 약속한다.

- 가. 상품의 수입, 수출 및 통과에 대한 관세 관련 사안에서 양 당사자 간 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, 국제표준에 따라 무역에 사용된 문서 및 자료 요소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
- 나. 관세분석소와 과학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분석 방법의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
- 다. 세관 직원을 교환하는 것
- 라. 관세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관세 관련 문제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조직하는 것
- 마. 무역 및 비지니스 공동체와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 을 개발하는 것
- 바.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, 수입 상품의 품목분류, 관세평가 및 특혜 관세대우를 위한 원산지 결정에 상호 지원하는 것
- 사. 수입, 수출, 재수출, 통과, 환적 및 그 밖의 통관절차에 대하여, 그리고 특히 위조품에 대하여 관세당국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적 재산권 집행을 증진하는 것, 그리고
- 아. 무역을 원활히 하면서, 모든 지역으로부터 양 당사자로 수입, 환적 또는 통과되는 해상화물과 그 밖의 선적의 보안을 증진하는 것. 양 당사자는 강화되고 확대된 협력의 목적이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한다.
 - 1) 국제무역의 물류망을 확보하기 위한 세관 관련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, 그리고
 - 2) 가장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, 화물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적절 히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는 모든 다자간 포럼에서 입장을 조 율하는 것
- 5. 양 당사자는 그들 간 기술 협력이 이 협정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준수를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무역원활화를 성취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. 양 당사자는 관세와 관세 관련 분야에서 협력 조치의 범위, 시기 및비용에 관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당사자의 관세 행정기관을 통하여 합의한다.

- 6. 양 당사자는, 각자의 관세 행정기관과 그 밖의 국경 관련 당국을 통하여, 심화된 공동 행동이 양 당사자 간 무역을 원활히 하고 공유된 다자간목적을 증진할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서, 특히 세계무역기구 및 세계관세기구에서의 관련 활동을 포함한 무역원활화에 관한 관련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검토한다. 양 당사자는 관세 및 무역원활화 분야의 국제기구, 특히 세계무역기구 및 세계관세기구에서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, 공통의 입장을 수립하기위해서 함께 노력한다.
- 7. 양 당사자는 이 장, '원산지 제품'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의정서, 그리고 그들 각자의 관세 법 또는 규정의 이행 및 집행에서 서로 지원한다.

제 6.14 조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

- 1. 양 당사자는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을 제공한다.
- 2. 어떠한 당사자도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9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의 제14장(분쟁해결)을 이용할 수 없다.

제 6.15 조 관세 접촉선

1. 양 당사자는 이 장과 '원산지 제품'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지정된 접촉선의 목록을 교환한다.

2. 접촉선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운영사안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. 사안이 접촉선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, 그 사안은 이 장에 언급된 관세위원회에 회부된다.

제 6.16 조 관세위원회

- 1. 제15.2조(전문위원회)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관세위원회는 이 장과 '원산지 제품'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, 그리고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, 그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.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, 관세위원회는 제15.1조(무역위원회)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.
- 2. 관세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관세 및 무역원활화 사안, '원산지 제품'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, 그리고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 표로 구성된다.
- 3. 관세위원회는 의사규칙을 채택하고 매년 회합하며, 회합장소는 양 당사자 가 교대로 한다.
- 4.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관세위원회는 무역원활화, 품목 분류, 상품의 원산지 및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을 포함하여, 특히 세관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7조 및 제8조와 관련하여, 이 장과 '원산지 제품'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, 그리고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에 포함된 사안에서 양 당사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논의하기 위해 회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.

5. 관세위원회는, 이 장과 '원산지 제품'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, 그리고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에 수립된 메커 니즘의 공동의 목적과 건전한 기능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결정, 권고 또는 의견을 제정할 수 있다.